

● 제 36 차 정기총회

정기총회 회의내용

1. 일 자 : 1985 년 4 월 26 일
2.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3. 안 건 : 1. 개회식
 2. 제 17 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3. 1984 년도 사업실적보고
 4. 1984 년도 결산 및 예산안 심의
 5. 1985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6. 기타
4. 참석회원 : 참석 235 명
위임 138 명 계 373 명

<총회내용>

· 개회식

- ① 국민의례에 이어서 리재철 회장의 개회사, 권숙정 국립중앙도서관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 ② 감사패 수여를 다음과 같이 하다.
포항제철학원 종합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
정종복 교수(전 청주대학교도서관장)

2. 제 17 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제 17 회 한국도서관상이 다음과 같이 시상된다.

<공적상>

최이환 성의상업고등학교 도서관장
하재근 서울시립정독도서관장

- 박용두 경기상업고등학교 사서교사
정덕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기술정보실장
박훈규 전주교육대학교도서관 사서
<봉사상>
김내진 경동고등학교 사서교사
이정희 용산공업고등학교 사서교사
이영인 서울대학교도서관 사서관
박길순 목포대학교도서관 사서
윤영대 상명여자대학교도서관학과 조교수
조선희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참고주임
홍옥자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정리주임
석현중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수서주임

—10 분간 휴회하다—

3. 성원 보고 : 사무국에서 다음과 같이 성원보고하다.

참석 373 명(참석 235 명, 위임 138 명)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리재철회장(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4. 1984 년도 사업실적보고

① 사무국장이 유인된 1984 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보고하다.

② 의장은 사업실적보고에 대하여 뚜렷한 실적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하다.

—의장은 질의 사항 있는지 묻다—

—원안 접수 동의안이 접수되고, 재청 삼

청이 접수되어 동의안이 성립되다—

—의장은 개의안이 있는지 묻다—

—개의안 접수없이 전원 동의안에 찬성하다—

③ 의장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5. 1984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

① 사무국에서 유인된 1984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 보고하다.

② 이어서 이용남감사는 1984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를 감사일, 금피조사, 각종 채권·채무, 세입·세출,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등의 순서로 상세히 설명 보고하다.

—의장은 질의사항 있는지 묻다—

③ 박용두 회원은 사무비 보다 사업비 지출이 항상 더 많은 액수이어야 건전한 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협회 재정 상태는 건전재정이 아직 되지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사무국을 최소한 유지하려면 최소한 필요적 경비가 필요하고, 세입 재원이 최소의 필요적 경비보다 훨씬 많아서 사업비 지출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6천여개의 전국의 도서관이 회원에 가입하여 회비수입이 증액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다.

④ 의장은 다른 의견있는지 묻다.

—이에 대하여 김내진 회원은 원안 통과시키도록 동의안을 제출하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동의안이 성립되다—

⑤ 의장은 다른 의견없음을 확인하고 동의안을 찬성 통과시키는 뜻에서 박수토록 요청한 바,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보고를 통과시키다.

⑥ 의장은 1984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6. 198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① 사무국에서 유인된 198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서에 의하여 사업별 예산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다.

- ② 의장은, 협회 살림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금년도 국고보조금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사무국장의 노고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치하한다고 말하다. 그리고 협회가 더욱 발전하려면 회원들의 협동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도서관계가 단결되면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고 회원들의 협동과 단합을 당부하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대하여 박용두 회원은 원안 통과시킬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성립되다—

- ③ 의장은 개의안이 있는지 묻다.

—이에 대하여 개의안 제출이 없이 동의안을 회원들의 박수로 통과시킬 의사를 표하다—

- ④ 의장은 198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7. 기타

- ① 의장은 기타 안건으로 토의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발언해 줄 것을 요청하다.

- ② 엄대섭회원은, 어려운 협회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회장과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공공도서관 소속청이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하다.

—이 문제는 70년대초부터 문공부이관이

검토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또 다시 민정당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의견으로는 공공도서관 소관부처를 문공부에 이관하는 것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서는, 본인이 그간 76개의 공공도서관을 순방 해 본 결과, 그중 95%는 독서실 형태로써 그 운영실태와 현실이 말이 아닌 것을 알았다. 물론 공공도서관 실태가 부진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토록 엉망인 것을 제삼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실태는 여러가지 이유이나 무엇보다도 문교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도서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문공부에 이관되면 적어도 공공도서관계는 크게 발전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협회가 사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활발한 로비활동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건의사항이 되면 좋고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정부당국에 제출하여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결의안을 내주면 좋겠다. 공공도서관의 소생과 발전을 위하여 36차 총회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주면 한다. —

- ③ 이에 대하여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 내용을 정리하다.

—엄대섭회원이 발언한 공공도서관 소속청의 문공부 이관문제는 본협회에서 깊이 검토중에 있다. 지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키로

하였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외부적으로 구체화되기전에 도서관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하나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임대섭회원의 동의안은 연구위원회를 조직 하는 것을 총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어떨런지를 묻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이 박수로 받아 들이다—

④ 김내진회원은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한다.

—학교도서관의 실태는 공공도서관 못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사서교사 정원을 전국적으로 33명 배정하였는데 그중 서울에 4명이 배정되었고, 본인이 4명 중 한사람이었는데 그간 모두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본인 1명만 남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50세 이상의 선생들이 도서관에 들어온다. 한직에 들어온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학교도서관이 발전될 수 있겠는가. 학교도서관이 발전되어야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행정체계가 전혀 없어, 도서관담당 장학사가 없고, 도서관 담당장학사가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임한다. 학교도서관의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고, 사서교사가 승진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되었으면한다—

⑤ 의장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교도서관이 잘되면 도서관계는 물론 도협이 잘 될 수 있다고 본다. 숫적으로 5천여개 도서관이 넘기 때문에

이 도서관들이 육성이 잘 되어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다면 협회의 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근 문교부에 교육개혁 위원회가 있어 이곳에서 학교도서관 육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김내진 회원의 의견을 총회가 받아 들여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학교도서관부회의 모임을 갖도록 총회의 결의로서 결정하는 어떨런지 묻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이 전원 찬성하다—

⑥ 박용두 회원은, 현행도서관법 제 13조에 보면 전문직 단체인 협회의 조직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도서관인이 협회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도서관법을 개정할 때 이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면 회원 배가가 될 것은 물론이고 회비 수입도 대단하여 협회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협회와 비슷한 단체 즉 회계사, 간호원 등의 협회도 법적 근거로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으며 회비 수입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⑦ 이에 대하여 의장은, 회원 가입후 자격증 발급을 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다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⑧ 의장은 기타 다른 사항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⑨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의 인사말을 하다.